

의안번호	제 119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9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연월일: 2019. 1. 9.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본청은 정책기획·조정·평가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학교의 일부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 1) 본청의 총괄·기획 역할 수행을 위해 학교법인, 사립학교 관련 업무 및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폭력사안처리
 -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교과서 지원
 - 교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 특수학급의 장학지도 및 컨설팅장학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의 대체인력풀 관리
- 2)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정함
 - 학교장 위임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에 관한 사항
- 3) 소속기관 및 학교에 대한 감사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

나.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일부개정 및 신설로 행정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 교육장의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관련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학교장에게 위임한 행정권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직 비율이 높아 교육지원청에서 채용모집이 어려운 직종의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함
- 3) 직속기관장에게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련 행정권한을 위임함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18. 12. 7. ~ 2018. 12. 27.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차.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사항
- 카.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 타.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장학지도 및 컨설팅장학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관할학교,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

제5조제13호 중 “관할사립”을 “관할 사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학교”를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교원”을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교육”을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사립의 중학교이하”를 “사립고등학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1호가목 중 “채용·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를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각급학교”로, “채용·관내”를 “채용·신규임용·관내”로, “·해고·징계”를 “·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한 관할 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및 중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6. 관할구역 내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
37.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 가. 교감 및 교사의 전보, 순회, 임지지정,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명예퇴직
 - 나. 교감 및 교사의 직위해제, 의원면직, 경징계(교사에 한함), 포상, 성과상여금, 공무외국외여행
 - 다.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교육공무직원”을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별표에 따른 자체채용 정원에 해당되는 자

나.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파견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단,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는 제외)

제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
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자.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2. ~ 8. (생략)</p> <p>9. <u>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지</u></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p> <p>----- -----.</p> <p>1.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자.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차.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카.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 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타.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장학 지도 및 컨설팅장학</u></p> <p>2. ~ 8. (현행과 같음)</p> <p>9. <u>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u></p>

현행	개정안
<u>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 승급</u>	<u>기관, 관할학교,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지방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 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u>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u>관할사립의 유치원·공민학 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 지·변경 인가</u>	13. <u>관할 사립</u> ----- ----- -----
14. 삭제	
15. <u>중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 항</u>	15.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 등학교</u> ----- ----- -----
가. 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	<삭제>
나. ~ 바.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u>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 구</u>	사. <u>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 교 교원</u> ----- -
아. <u>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u>	아. <u>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 교 교육</u> -----
자. (생략)	자. (현행과 같음)
16. <u>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 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u>	16. <u>사립고등학교 이하</u> ----- -----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18. <u>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u>	18. <u>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u>

현행	개정안
<p><u>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u> 직인 등록 관리</p> <p>19. ~ 24. (생략)</p> <p>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p> <p>가. ~ 바. (생략)</p> <p>26. 삭제</p> <p>27. ~ 30. (생략)</p> <p>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u>채용·관내 전보·임지 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u></p> <p>나. <u>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u></p>	<p><u>법인,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u> <u>및 사립 특수학교</u>--</p> <p>19. ~ 24. (현행과 같음)</p> <p>25. ----- ----- ----- ----- <u>사항</u></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27. ~ 30. (현행과 같음)</p> <p>31. ----- ----- -----</p> <p>가. ----- ----- <u>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관내 전보·임지 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과건·징계</u></p> <p>나. <u>관할구역</u> ----- ----- <u>각급학교</u>-----</p>

현행	개정안
<p><u>수학교</u>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u>채용·관내</u> 전보·임지지정·휴직(6개월 이상)·복직(6개월 이상 휴직)·<u>해고·징계</u></p>	<p>----- ----- <u>채용·신규임용·관내</u> ----- ----- ----·<u>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u></p>
<p>다. (생략)</p>	<p>다. (현행과 같음)</p>
<p>32.·33. (생략)</p>	<p>32.·33.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34. 「<u>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제16조에 의한 <u>관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35. <u>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호 각급학교 및 중학교 이하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36. <u>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37. <u>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u> 가. <u>교감 및 교사의 전보, 순회, 임지지정,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명예퇴직</u> 나. <u>교감 및 교사의 직위해제, 의원면직, 경징계(교사에 한함), 포상, 성과상여금,</u></p>

현행	개정안
<p>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p> <p>1.·2. (생략)</p> <p>3. <u>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u></p> <p>4. ~ 9. (생략)</p> <p>10. <u>교육공무직원의 휴직(6개월 미만)·복직(6개월 미만 휴직)</u></p> <p><u><신설></u></p>	<p><u>공무외국외여행</u></p> <p><u>다.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u></p> <p>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4. ~ 9. (현행과 같음)</p> <p>10. <u>소속 교육공무직원</u>-----</p> <p>-----</p> <p>11.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u></p> <p><u>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별표]의 자체채용 정원</u></p> <p><u>나.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파견 등에 따른 대체인력</u></p> <p><u>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u></p>
<p>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p>	<p>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p> <p>-----</p> <p>-----.</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u>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u></p> <p>3. ~ 7. (생략)</p> <p><u><신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u>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는 제외</u></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u></p>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4.] [대통령령 제27667호, 2016.12.13. 제정]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3.27.] [충청북도조례 제3770호, 2015.3.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4.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